#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7

발의연월일: 2025. 1. 8.

발 의 자:김상훈·김선교·이종욱

김승수 · 김소희 · 고동진

박충권 • 권영진 • 박수영

강대식 · 송언석 · 정희용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명령을 하려는 때에 그 영업정지가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영업정지에 갈음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징금의 상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업규모가 영세한 폐기물처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2억원의 상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법률 제 호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과 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제28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이	과징금 처분) ①
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	
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	
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	
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u>있다</u> . 다만, 그	<u>있으며, 이 경우 과</u>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	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	<u>수 없다</u>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